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

제안년월일 : 2015. 11. 12

제 안 자 : 박 학 동

찬 성 자 : 유 경 상

1. 제안이유

『지방자치법』 제39조 제1항 및 제127조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“2016년도 일반 · 특별회계 세입 · 세출 예산안”을 효율적으로 심의 · 의결하기 위하여 『지방자치법』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특별위원회 구성 및 방법 (위원 선임)
- 특별위원회 존속기간
- 심사안건
- 심사방법

3. 관련근거

- 『지방자치법』 제39조, 제56조, 제127조
- 『지방자치법시행령』 제56조
-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, 제9조, 제10조
-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“2016년도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”을 효율적으로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『지방자치법』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

1. 특별위원회 명칭 :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2. 특별위원회 구성 및 방법

가. 위원회 위원 9인으로 구성

나. 위원회 구성방법은 각 위원회에서 3인의 의원으로 총 9인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구성 함.

3. 특별위원회 존속기간

◦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도록 함.

4. 심사안건

◦ 2016년도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

5. 심사방법

◦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·답변
◦ 관련자료의 검토 및 심사